

CONTENTS

NEWS

-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변경안내
- RCEP 이행 관련 현황표 및 회원 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FTA-PASS STUDY

으로 제품의 원산지 판정 할 두 가지 상황 하기

FAQ

교육ㆍ자격

- · (제조기업) 세번변경기준 · 자재명세서를 갱신해야 · 2022년도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 FTA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채용 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하기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공고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상반기) '22.3.2. ~ 3.18. (하반기) '22.7.4. ~ 7.15.

•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 **사업규모**: 6억원 / 지원목표 약 390개 기업

• 지원금액: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내용: 민간 컨설턴트(관세사)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제공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

세관	문의처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4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공지사항(794번) 확인하러 가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변경안내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 제 9 란: HS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

- **제10란:** HS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 •시행일: 2022.1.25.(화)
- 「HS2017 개정에 따른 한-중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폐지
- 2022.1.1.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 시, 위 HS2022 개정 규정을 소급적용 함



HS2022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준 통보에 따른 FTA-PASS 활용법

- ① 원산지판정: 기준년도 HS2012 기준으로 판정
 - HS코드 메뉴에 기준년도 HS2012 등록
- ② 한-중 FTA C/O 신청 : 기준년도 HS2022 세번 입력
 - FTA증명서(기관) 메뉴에 기준년도 HS2022 등록



RCEP 이행 관련 현황표 및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RCEP 회원국별 원산지증명 발급기관>

발효	회원국	발급기관	
	뉴질랜드	협의 중	
	라오스	라오스 상공회의소	
	베트남	베트남 산업무역부	
'22.1.1.	브루나이	부르나이 외교통상부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관	
	일본	일본 상공회의소	
	중국	중국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캄보디아	캄보디아 상무부	
	태국	태국 상무부	
	호주	호주 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	
'22.1.1.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22.3.18. (예정)	말레이시아	-	
	미얀마	미얀마 상무부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통상부	
	필리핀	필리핀 세관	

Tip! 원산지증명서 수취 시 발급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CEP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발효	회원국	종이원본C/O	종이 C/O 원본의 스캔본	전자 발급된 C/O의 인쇄본	모든 전자적 C/O (e-C/O, 스캔본 등 포함)
'22.1.1.	뉴질랜드	0			0
	라오스	0			
	베트남	0			0
	브루나이	0		0	
	싱가포르	0	0	0	0
	일본	0		0	0
	중국	0		0	0
	캄보디아	0			
	태국	0			
	호주	0	0	0	0
'22.2.1.	한국	0	0	0	0
'22.3.18. 예정	말레이시아	0		0	
	미얀마	0			
-	인도네시아	0			0
	필리핀	0			0

공지사항(793번) 확인하러 가기

(제조기업) 세번변경기준으로 제품의 원산지 판정하기

세번변경기준

커 버 스 토 리

투입된 비원산지재료들의 세번과 완성품 세번이 상이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세번변경기준은 세 가지 유형인 2단위, 4단위, 6단위가 있습니다.

- 2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
- 4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
- 6단위 세번변경기준: 해당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처음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

완제품

• 물품 : 철강 반제품

· 세번: 7207.11

원재료



• 물품: 열간압연평판

세번: 7208.10

불충족

2단위 (CC)

7207.11 7208.10

충족 4단위 6단위 (CTH) (CTSH) 7207.11 7207.11

7208.10

7208.10

< 세번변경기준으로 판정하기 위해 활용해야 할 메뉴 >

거래처 \rightarrow 물품정보 \rightarrow 자재명세서 \rightarrow HS코드 \rightarrow 판매단가 \rightarrow 일괄판정(매출일)

<[HS코드] 메뉴 등록 방법 >

- ① 완제품(철강 반제품) 세번 등록
- ② 원재료(열간압연평판) 세번 등록
- ※ 협정별로 사용되는 기준년도가 상이하므로 필요한 협정에 맞는 기준년도 등록
- ※ 자세한 내용은 '20년 3월호 소식지 참조

• FTA-PASS란?

중견ㆍ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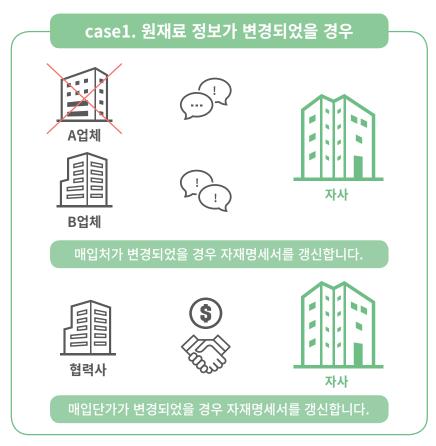
철강 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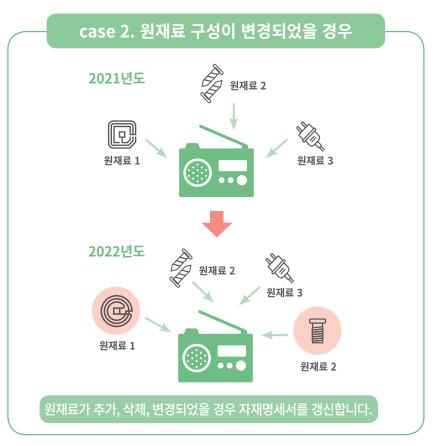
열간압연평판

KIOI 소식지 Vol. 111

자재명세서를 갱신해야 할 두 가지 상황

원재료 정보 또는 원재료 구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내용에 맞춰 갱신하면 됩니다.





Tip. FTA-PASS는 생산일 기준으로 구매일은 이전에 발생, 판매일은 이후에 발생해야 합니다.

원재료 구매



완제품 판매

2022년도 원산지관리사 ·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일정

2022년도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및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회차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 접수기간	합격자발표
원산지관리사	30회(국가공인23회)	4.23.(토)	3.23.(수)	3.25.(금) ~ 4.6.(수)	5.20.(금)
	31회(국가공인24회)	11.12.(토)	10.12.(수)	10.14.(금) ~ 10.26.(수)	12.9.(금)
원산지실무사	15회	8.13.(토)	7.13.(수)	7.15.(금) ~ 7.27.(수)	9.8.(목)
	16회	11.12.(토)	10.12.(수)	10.1.(금) ~ 10.26.(수)	12.9.(금)

[※] 세부일정이 변동될 수 있사오니 해당 시험의 시험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검정방법 : 필기시험(4지선다 객관식)
- 응시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FTA원산지아카데미(www.ftaedu.or.kr)' → 자격시험 → 시험접수 → 자격 시험명 클릭
- 응 시 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자격증 발급비 5,000원 별도)
- 불 : 접수마감 전 100% 환불 \rightarrow 접수마감 후~시험 5일전 부분환불 \rightarrow 시험 4일전부터 환불불가
- 문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지금은 FTA 시대~! FTA 분야 전문자격 취득자 채용으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FTA·원산지 관리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FTA 활용 직수출 기업
-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예정) 기업
- 체결상대국의 FTA 원산지검증 대응 필요기업

- FTA 활용산업 內 제조기업(간접수출)
- 국내 고객사에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예정) 기업
- 국내 고객사로부터 원산지관리 평가를 받는 기업

FTA·원산지 관리 전문인력의 종류

- 원산지관리사(Certified Origin Specialist)
- 국가공인 민간자격
-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 3년 주기 유효기간 갱신(보수교육 이수)을 통해 전문성 유지
- 원산지실무사(Certified Origin Manager)
- 등록 민간자격
- FTA·원산지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 능력 보유

자격증별 FTA 업무범위

